

김동호 변호사의 법률 칼럼

#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과 공사 대금 채무의 소멸 시기

원칙적으로 하수급인은 계약의 상대방인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고 발주자(도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4조에는 원수급인의 부도, 지급 거절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경우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이 규정돼 있다. 글 김동호(법무법인 렉스 변호사)



###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합의만으로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①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파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 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제1호), ②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합의한 때(제2호),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또는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제3호, 제4호)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분에 상당한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하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하게 된다.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와 관련해 현행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를 살펴보면 제1·3·4호는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이 있어야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제2호는 별도로 수급사업자의 직접 지급 요청이 없어도 3자 간의 합의만으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제2호의 경우 2004. 1. 20. 법률 제 7107호로 개정되기 전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직접 지급을 합의한 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했으나, 3자 간의 합의 이외에 하수급인의 청구가 있어야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 3자 간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불이 합의된 경우라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자에게 그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171 판결).

그러나 이 법률의 개정이 종전 규정을 바꿔야 할 특별한 근거가 없어 개정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보인다는 학계와 실무계의 비판이 제기됐다. 그 후 2007. 7. 19. 법률 제 8539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본래와 같이 3자 간의 합의만으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됐다.

### 직접 지급 사유 발생 시 발주자의 공사 대금 채무 소멸 간주

하도급법상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함으로써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의 소멸 시기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공사대금 채무의 소멸 시기에 따라 수급인의 채권자와 하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채권자 중 누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지 결정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현실적으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했을 때 발주자의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한다는 견해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발주자의 공사대금 채무가 소멸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원사업자가 부도로 인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지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사유 발생 전에 이뤄진 강제 집행 또는 보전 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 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고 판시한 바 있는데, 위 판례의 취지만으로는 판례가 어느 견해를 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 집행 보전이 된 경우 집행 보전된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는 표현에 비추어 후자의 견해라고 해석할 소지가 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 지급 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후자의 견해가 위 규정의 문언상 해석에 더 부합하는 해석으로 보이고, 하도급법 제14조 규정의 취지상 수급인의 채권자보다는 하수급인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후자의 견해가 타당해 보인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대법원 판례에 의한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

